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907

발의연월일: 2024. 8. 16.

발 의 자: 김승수 · 우재준 · 김소희

박충권 • 임이자 • 김상훈

한기호 • 박성민 • 김희정

조승환 · 서지영 · 강선영

의원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,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그러나 소방장비 교체, 청사 환경 개선 등과 관련하여 사업 우선순위와 재정 여건 등에 의한 편차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서비스 질 향상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시·도지사에게 소방공무원 복지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수립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소방관서 관리 등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7조 및 제8조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7조제2항제3호 중 "개선에"를 "개선 및 소방관서 운영에"로 한다.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른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소방관서 운영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여 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7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	제7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		
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・시	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・시		
행) ① (생 략)	행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	②		
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			
1. ·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		
3.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<u>개선에</u>	3 <u>개선 및</u>		
관한 사항	소방관서 운영에		
4. ~ 8. (생 략)	4. ~ 8. (현행과 같음)		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		
제8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	제8조(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		
복지 집행계획의 수립·시행)	복지 집행계획의 수립·시행)		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② 시・도지사는 기본계획 및		
	연도별계획에 따른 소방공무원		
	근무여건 개선 및 소방관서 운		
	영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		
	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		
	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적 조		
	치를 강구하여 집행계획에 반		
	영하여야 한다.		
② (생략)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		